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 A charitable institution limited by guarantee registered in Hong Kong

(서울사무소)

결 정 문

사건번호: KR-1300089
신청인: ABB ASEA BROWN BOVERILTD
피신청인 : 강인자(KANG IN JA)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 : ABB ASEA BROWN BOVERILTD

Affolternstrasse Zurich, Switzerland

대리인 : Liu, Shen & Associates Lan JIN, Qin HE

Hanghai Plaza (1+1 Plaza), 10th Floor, 10 Caihefang
Road, Haidian District Beijing 100080, China

피신청인: 강인자(KANG IN JA)

서울 강남구 청담동 1

분쟁 도메인이름은 "abb-13.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식회사 가비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0번지 유스페이스
B동 4층)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3. 5. 10.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 라고 함)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3. 6. 27.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3. 6. 28.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3. 6. 28.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 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 규정을 위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 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 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13. 6. 28.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고, 피신청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13. 7. 18.임을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013. 7. 18.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센터는 2013. 7. 19.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013. 7. 22. 센터는 김종윤 조정위원에게 선임을 요청하였고, 2013. 7. 22. 조정인으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조정부를 구성하였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은 스위스 법인이며, 전력 및 자동화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중국 및 한국 등에 자회사들을 설립하여 국제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신청인의 상호는 ABB Asea Brown Boveri Ltd.이며, 앞부분인 ABB는 신청인의 주된 상표 및 서비스표로 사용되고 있다. 신청인은 자신의 많은 경제활동에서 ABB를 상표 및 서비스표로 자주 사용하였으며, 그의 해외 자회사들의 상호에도 ABB가 요부로서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청인의 상호와 자회사의 상호에 ABB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ABB를 주된 상표로 사용함으로써 ABB는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신청인을 표창하는 상표로 인식되고 있다.

신청인은 이 ABB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 상표등록을 받았으며, 한국에서도 ABB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79개의 상표를 등록하였고,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상품 및 서비스 구분은 제 1, 3, 4, 5, 7, 9, 10, 11, 13, 14,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34, 35, 37, 38, 39, 40, 41, 42, 43, 44, 45류이다. 신청인은 중국에서도 ABB 상표 보호를 위해 상표등록을 받았으며, 보호되는 상품들은 상품류 제9류의 ‘컴퓨터 주변기기, 전자기기, 전기기기’와 제11류의 ‘조명용, 조리용, 냉각용 장치’ 등이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www.abb-13.com 이란 웹사이트를 개설하였으나, 이 웹사이트는 등록지인 한국에서는 열리지도 않고, 기타 지역에서는 두 가지 로그인 페이지밖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 중 하나는 컴퓨터 로그인 페이지이고, 다른 하나는 핸드폰 로그인 페이지인데, 어떠한 가입방식도 제공되어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 웹사이트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서 gTLD임을 나타내는 확장자인 ‘.com’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abb-13인데, 이는 로마자 알파벳 ‘abb’ 와 아라비아 숫자 ‘13’ 을 ‘-’ (대쉬)로 연결한 것이다. 이 중에서 아라비아 숫자 ‘13’ 과 ‘-’ (대쉬)는 식별력이 낮은 부분들이고, 나머지 부분인 ‘abb’ 가 가장 주된 식별작용을 하는 부분인데, 이는 신청인의 상표 및 서비스표와 동일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 ABB와 매우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여부에 해당하는 ABB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자들 이외에는 합법적으로 사용된 바가 없다. 그리고 피신청인의 명칭과 이 사건 도메인이름 사이에 어떠한 유사점도 없다.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보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 또는 그 요부인 ABB에 관하여 어떠한 합법적 권리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www.abb-13.com 이란 웹사이트를 개설하였으나, 이 웹사이트는 등록지인 한국에서는 열리지도 않고, 기타 지역에서는 두 가지 로그인 페이지밖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 중 하나는 컴퓨터 로그인 페이지이고, 다른 하나는 핸드폰 로그인 페이지인데, 어떠한 가입방식도 제공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웹사이트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행위는 신청인이 그의 ABB 상표에서 비롯될 수 있는 ABB-13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A. 상표·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서 gTLD임을 나타내는 확장자인 ‘.com’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abb-13’인데, 두 개의 구성을 연결하는 용도로 사용된 ‘-’ (대쉬)와 일종의 가지번호 식으로 사용된 아라비아 숫자 ‘13’은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식별력이 강한 부분은 ‘abb’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경우 (도메인이름의 특성상 ‘abb’가 불가피하게 소문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요부인 ‘abb’와 신청인의 상표 ‘ABB’는 동일하다. 이

와 같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구성부분들 중 식별력이 강한 부분이 신청인의 상표 및 서비스표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신청인의 상표 및 서비스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답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해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여부에 해당하는 ABB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자들 이외에는 합법적으로 사용된 바가 없다고 하며, 또한 피신청인의 명칭 등과 이 사건 도메인이름 사이에 어떠한 유사점도 없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 또는 그 요부인 ABB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피신청인은 2012. 8. 22.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 받았으나,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까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피신청인은 웹사이트를 개설하긴 하였으나, 이 웹사이트는 등록지인 한국에서는 열리지도 않고, 기타 지역에서는 두 가지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어떠한 가입방식도 제공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웹사이트는 명목상으로 개설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신청인의 이러한 행위로부터 볼 때, 피신청인의 이 사건 도메

인 이름 등록 및 사용은, 신청인이 그의 ABB 상표에서 비롯될 수 있는 다양한 도메인 이름들 중 ‘ABB-13’ 라는 도메인 이름 등록을 저해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에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ABB 상표가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인바, 수요자들은 이 도메인 이름을 대할 때, ABB가 표창하는 신청인의 신용을 연상할 수 있을 것인데,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등록 받아 현재와 같이 방치해 둔 사실로 인하여, 신청인의 도메인 이름 관리가 부실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신청인이 그간 쌓아 온 신용이나 명성에 흠이 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에 있어서 피신청인에게 부정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조정부는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도메인 이름인 <abb-13.com>을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김종윤
1인 조정인

결정일: 2013년 8월 12일